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0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	4
1. 2028 유엔해양총회(UNOC) 개요	4
2. 제정안의 필요성 및 구성체계	7
IV.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법 제명	12
2. 목적 및 정의	13
3. 국가 등의 책무	16
4. 준비위원회 등 조직 관련 규정	17
5. 국가 등의 지원 및 기부금품 접수 등	24
6.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의 발행 및 자료의 제공요청	29
7.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30
8.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32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34
10. 부칙	35
※ 참고자료	37

I. 제안경위

1.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06호)

가.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 2026. 1. 16.

다. 회부일: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준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라 한다)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또

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위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총괄 검토

1. 2028 유엔해양총회(UNOC) 개요

가. 유엔해양총회(UNOC) 개요

□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UNOC)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목표로 개최되는 정상급·고위급회의로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해양 환경 분야인 SDG 14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최를 결의하였으며, 통상 3년을 주기로 운영됨.

< SDG 14 정의 및 목표 >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5년 9월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전 세계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 포함
- [SDG14 정의]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바다와 해양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목표로 1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 [세부목표] ❶ 해양 오염 방지 (14.1) ❷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 (14.2) ❸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14.3) ❹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성 보장 (14.4) ❺ 해양 및 연안 지역의 보호 구역 확대 (14.5) ❻ 어업 보조금 규제 (14.6) ❼ 개발도상국의 해양 자원 이용 지원 (14.7) ❽ 해양 연구 및 기술 이전 촉진 (14.A) ❾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14.B) ❿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14.C)

자료: 해양수산부

□ 2017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균형있는 국제적 의견 수렴

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동 개최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2025년 제3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유엔해양총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무분별한 불법 조업 등 전 지구적 해양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의제들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 결의안은 회원국의 이행추구와 전 세계 해양관리의 기준을 선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¹⁾

< 역대 UNOC 개최 현황 >

회차	개최국	개최지 / 개최일자	주요성과 및 의제
1차	스웨덴·피지	유엔 본부 / '17.6.5~6.10.	-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 행동 촉구' 선언문 채택 - 약 1,400여 건의 자발적 공약 등록
2차	포르투갈·케냐	케냐 나이로비('18.11.26~28), 포르투갈 리스본('22.6.27~7.1*)	- '리스본 선언' 채택: 과학 기반의 해양 행동 강화 - 해양 플라스틱 규제 및 해양 보호구역(MPA) 확대 논의
3차	프랑스·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산호세('24.6.7~8), 프랑스 니스('25.6.9~13)	- 해양 금융 활성화 및 심해 채굴 규제 가이드라인 논의 -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 구체화

주: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
자료: 해양수산부

1) 최지연·박수진·김주현·이혜영·염재원, 「KMI 동향분석」, VOL.210, 제3차 UN해양총회, 해양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전환 가속화와 강력한 다자협력 촉구, 2025.7

나. 2028 유엔해양총회(UNOC) 개요

□ 정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4년 4월 칠레와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2025년 6월 제3차 총회에서 공동 개최 의사 공식 표명을 거쳐, 2025년 12월 9일 제80차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4차 총회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 주최하는 유엔해양총회의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은 2028년 6월 본회의를 주최하고,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4차 UN해양총회가 개최되는 구체적인 날짜, 개최도시, 준비 절차 등의 세부 사항(modalities of the Conference)은 제80차 UN 총회 회기 종료(~2026.9)까지 숙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UN 총회의 결의를 통해 2026년 중 결정될 예정임.

<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결의안 주요내용 >

문서제목	• A/RES/80/108
채택일자	• '25.12.9
투표결과	• 171개국 표결, 169개국 찬성
주요내용	• 제4차 UN해양총회를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개최 • 80차 UN총회 회기 종료('26.9) 전 UNOC4의 이행방식(modalities)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숙고(consider)하기로 결정

자료: 해양수산부

□ 금번 제4차 총회의 대한민국 개최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서의 주도권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SDG 14 달성 시한인 2030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새로운 해양 질서와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제정안의 필요성 및 구성체계

가. 제정안의 필요성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8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질서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양분야에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해양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개회식이나 본회의, 폐회식뿐만 아니라, 본회의 전후로 열리는 다양한 양자회담, 고위급 회의, 부속·특별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제3차 총회(프랑스 니스)의 경우 UN 회원국 정상급 인사 55명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등 15,000명 이상이 참석한 바 있음.

< 역대 UNOC 참석 규모 >

회차	참석 규모
1차	정상급 16명, 전체 4000여명 규모
2차	정상급 24명, 전체 6000여명 규모
3차	정상급 55명, 전체 15,000여명 규모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개최되는 2028년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기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기에 약 40개국 이상의 정상급 포함 전체 약 2만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상황임²⁾.

이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단일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범정부적 조정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입법례로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등이 제정안과 유사한 구성·체계로 규

2) 2025년 경주APEC의 경우 참석규모는 21개 회원국 및 지역 정상 대표단, 경제인, 언론인 등 약 2만 명임(한국관광공사 K-MICE 정보시스템, https://k-mice.visitkorea.or.kr/convention_kr/apec/2025APEC.jsp, 검색일자: 2026.2.27.)

정되어 기 시행된 바 있음.

- 유엔해양총회 개최는 2028년 6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총회 일정과 의제 등 주요 세부 사항이 2026년 하반기 내 UN 총회 결의로 확정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UN 총회 결의 전에 제정법을 통하여 범부처 차원의 공식적인 준비 체계를 갖추고, UN 측과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UN 차원의 총회 준비 일정(안) >

일시	일정
'25.12	· 개최 결의안 UN총회 채택
'26.上	· 이행방식 결의안 초안 UN회원국 회람 및 의견수렴
'26.下	· 이행방식 결의안 최종본 총회 제출 및 채택
'27.2	· NGO, 시민단체 등의 UNOC4 특별참가자격 1차 신청(~3월)
'27.4	· 특별참가자격 1차 선정기관 목록 회원국 회람
'27.5	· 준비 회의(Preparatory meeting)를 위한 배경문서 준비 및 회원국 회람
'27.6	· 칠레 주최 사전고위급 행사 준비, UN 총회의장의 공동조정자 임명
'27.7	· 준비 회의(UN본부) 참석, 패널 토의 의제 회원국 회람
'27.8	· UN DESA의 글로벌온라인협의(Global Online Consultation) 진행
'27.9	· 패널토의 의제별 컨셉 페이지, 공동의장 및 전문가 추천 관련 회원국 의견 수렴(~11월)
'27.10	· UN회원국 대표부 대상 UNOC4 공식 초청장(UN사무총장 명의) 발송
'27.11	· NGO,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UNOC4 선언문 관련 의견 수렴 및 NGO, 시민단체 등의 UNOC4 특별참가자격 2차 신청(~12월)
'27.12	· 한-칠레의 패널토의 공동의장 지정

일시	일정
'27.12	· 공동조정자가 준비회의, 글로벌온라인협의를 참고하여 작성한 UNOC4 공동선언문 초안 회원국 회람
'28.1	· 선언문 협의 개시(3월까지 총 3~4차례)
'28.2	· 특별참가자격 2차 선정기관 목록 회원국 회람
'28.4	· 패널토의 의제별 컨셉페이퍼 제출
'28.5	· 선언문 편집·번역 등 마무리 작업
'28.6	· 행사 진행

자료: 해양수산부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 제명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으로, 19개 조문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한 한시법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회 및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및 실무를 담당할 준비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행사장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특례와 더불어 기념주화·우표 등 발행 및 관계 기관 인력 파견 요청 등 범정부 차원의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제정안 개요 >

제명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본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제8조(국가 등의 지원)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기념주화 발행)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제16조(유엔해양총회 회장 등의 사용)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IV. 주요 조문별 검토

1. 법 제명

□ 제정안의 법 제명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으로 개최 연도 및 총회 명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에서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 제명에 연도, 행사의 명칭, 개최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의 제명은 이러한 입법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나, 법 제명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엔해양총회의 경우 추후 공모를 통하여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엔해양총회의 개최도시는 2026년까지 UN 총회 결의로 채택이 필요한 이행방식 결의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국내 차원에서 개최도시를 신속히 확정하고 UN 회원국 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이고, 안 제2조는 유엔해양총회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정의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엔해양총회등”이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이란 유엔해양총회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안 제1조는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제정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의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됨.

- 안 제2조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유엔해양총회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뿐만 아니라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es’ Meeting)”가 유엔해양총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칠레에서 2027년 개최되는 “사전 고위급 회의”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개최되는 유엔해양총회의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정의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UN해양총회 행사 구성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본행사	개회식	• 회의의 공식 시작을 알리며, 의제·규칙 확정 및 개회 연설 진행	'25.6.9.
	본회의	•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토론 무대 - 총 10회 개최, 성과, 정책 등을 발언하며 정상 → 장관급 순서로 5분 시간제한	'25.6.9 ~ 6.13
	해양행동 패널	• 주제별 심화 토론 세션으로 정부,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총 10개의 패널토의 진행 * ①해양생태계, ②해양과학기술, ③해양금융, ④해양오염, ⑤지속가능한 어업, ⑥해양경제, ⑦해양기후·생물, ⑧지역 협력, ⑨해양식량, ⑩국제법 이행	'25.6.9 ~ 6.13
	폐회식	• 회의 결과를 종합하고 성과를 공표	'25.6.13.
부대행사		• 공개 신청에서 1,250건이 넘는 지원을 받아, UNOC3 관련 450개 이상의 부대행사 개최 - 135개는 회의 장소에서, 250개 이상은 니스 시내 전역에서, 80개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	'25.6.9 ~ 6.13
특별행사		• 개최국이 기획하는 고위급 별도 행사(3건) - ①The One Ocean Science Congress(6.4~6) ②The ocean Rise&Resilience Coalition(6.7) ③Blue Economy and Finance Forum(6.7~8)	'25.6.4 ~ 6.8
병행행사		• 본회의 전후로 열리는 부속행사 - ①La Baleine(6.2~13), ②Ocean Wonders(6.2~15)③ 세계해양의날 기념식(6.8), ④세계섬포럼(6.8~10), ⑤델타세계포럼(6.9), ⑥“해양을 위한 아프리카” 정상 회의(6.9), ⑦“연결된 지중해를 위하여” 정상회의(6.9), ⑧프랑스-태평양 정상회의(6.11) 등	'25.6.2 ~ 6.15
양자회의		• 정상·장관급 개별 외교 회담 - 회의장 내 소회의실 10개 제공(12인 규모)	'25.6.9 ~ 6.13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기타	• (공약) 신규 800건, 누적 2,657건 등록 • (공동선언문) 1주 간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정치선언문 채택 - Our ocean, our future: united for urgent action • (파트너십)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자료: 해양수산부

□ 안 제2조제2호는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유엔해양총회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최소한의 필요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는 ‘고위관리회의’는 유엔해양총회에서 통상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유엔해양총회등”의 정의에서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를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회의로 수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정임.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진입도로, 공원, 주차장 등 유엔해양총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된 현행법과의 관계를 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정책 분야별 주요법·기본법이나 각종 지원법·촉진법 등에서 해당 분야 국가 등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준비위원회 등 조직 관련 규정(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질병관리청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①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행정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준비위원회의 심의 또는 준비위원회에 보고된 계획 등의 이행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기획예산처 · 대통령경호처 · 국무조정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해당 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사람)
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 2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민간전문가
- ③ 그 밖의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유엔해양총회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엔해양총회등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근거와 그 구성 및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엔해양총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는 시간적·행정적 제약이 있고, 유엔해양총회 개최 시점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정부 조직을 활용한 신속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임.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준비위원회를 두고(제5조),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행정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준비위원회의 심의 또는 준비위원회에 보고된 계획 등의 이행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를 두며(제6조),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두고 있음(제7조).

유사 입법례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준비위원회를 두고, 준비위원회에 준비기획단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대통령경호처장·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비교 >

구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준비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역할	기본 방향 수립, 관계 부처 간 조정	기본 방향 수립, 관계 부처 간 조정
준비기획단	소속	준비위원회 소속	해양수산부 소속
	단장	준비기획단 단장(외교부장관)	규정 없음 (실장급 공무원 예정)
	역할	준비사무의 실질적 추진(집행·지원)	준비·개최 사업 추진(집행·지원)
	내부 실무조정기구	실무조정회의(시행령상)	규정 없음
보좌기구	명칭	실무조정회의	집행위원회
	근거	시행령	법률
	소속	준비기획단	준비위원회
	위원장	외교부장관 또는 부단장	해양수산부장관
	위원	규정 없음	관계부처 차관 등
	역할	범부처 실무 조정	준비위원회 보좌, 지원 등의 역할 규정, 역할 범위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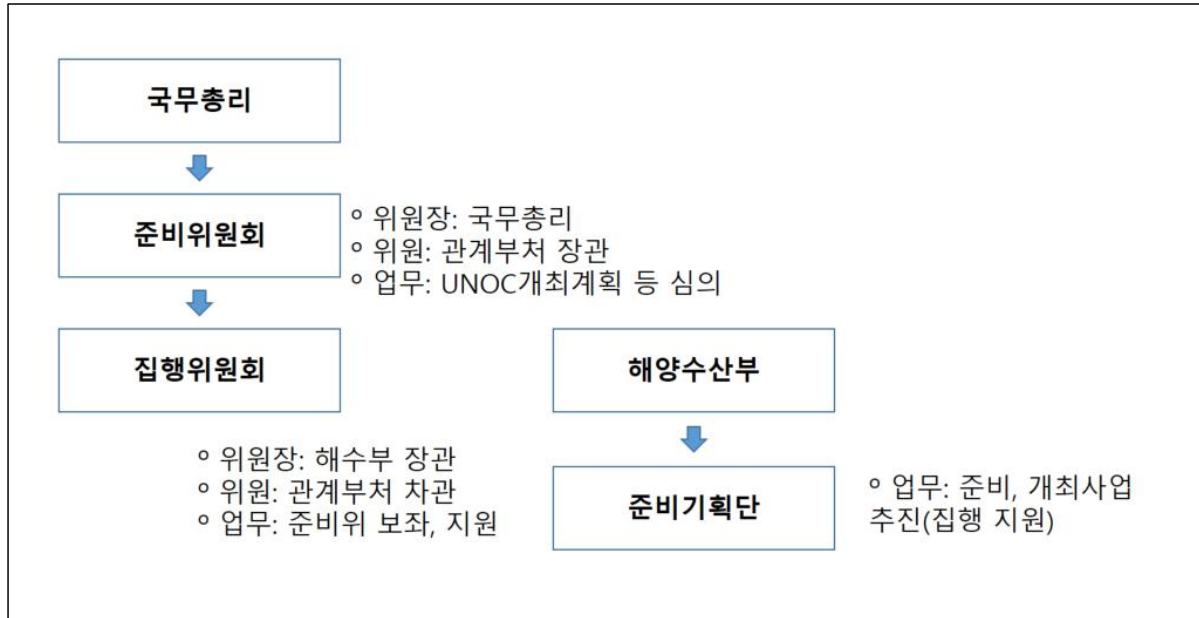
□ 제정안에 따른 지원조직의 구조와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총리 → 준비위원회 → 준비기획단 → 실무조정회의(시행령)’의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제정안의 경우에는 ①‘총리 → 준비위원회 → 집행위원회(해수부장관)’, ②‘해수부 → 준비기획단’의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집행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두 지원조직의 업무범위와 지휘체계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따른 지원조직 구성 >



둘째, 제정안에는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행정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준비위원회의 심의 또는 준비위원회에 보고된 계획 등의 이행 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집행위원회의 성격이 단순 자문·보고기구인지 또는 실질적인 심의·의결 및 조정기구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 제6조제2항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는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준비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집행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심의나 보고된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며, 준비기획단은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으로 각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 제5조제4항에서 준비위원회의 간사를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의 장”(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실제 계획 수립시행 등 실무를 지정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정안 제5조제3항제3호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립 근거 법률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민법」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함.

5. 국가 등의 지원 및 기부금품 접수 등(안 제8조~제10조)

□ 안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의 편의제공 요청 근거를, 안 제9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4)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의 경우 준비위원회 간사를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⑤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엔해양총회등 기반사업 조성
2. 유엔해양총회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엔해양총회등 계획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 안 제8조는 유엔해양총회등의 원활한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국제행사의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협조요청 대상에 안 제8조제1항과 같이 ‘법인·단체’를 포함할 경우, 실무상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에 준의무를 부과하는 구조가 되므로, 삭제 또는 최소한 자율적 협조 수준으로 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⁵⁾

그러나 동 조항은 협조 요청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를 강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통해 이미 각 기관의 재량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는 점 등에서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 규정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⁶⁾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5) 한국무역협회 제출의견

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엔해양총회등의 공익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⁷⁾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 중으로 준비기획단 외에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제정안 제8조에서 준비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 등의 추가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제한의 특례)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6.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의 발행 및 자료의 제공요청(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 관련 한국은행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준비기획단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해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의 홍보를 위한 기념주화나 기념우표의 발행 및 행사 관련 자료제공 요청 등 규정은 대규모 행사 지원에 관한 법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안 제13조, 제18조)

- 안 제13조에서는 준비기획단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파견요청을, 안 제18조에서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안 제13조는 준비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준비기획단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안 제18조의 경우 파견된 임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일반적인 입법방식임.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난 제3차 총회(프랑스 니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15,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개최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적 조치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5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시행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엔해양총회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중복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경주 APEC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교통 및 숙박대책이 현안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은 유엔해양총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안 제8조 제명이 “국가 등의 지원”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특별교통 숙박대책 수립 관련 지원도 안 제15조제4항이 아닌 제8조제2항 각 호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의 경우 법안 단계에서는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으나, 외교부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단계에서 해당 조항이 추가된 바 있음.⁸⁾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8)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검토보고(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24.11.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 안 제16조는 유엔해양총회 회장 등의 사용을 위한 승인을, 안 제17조는 유엔해양총회에 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회장 등 사용 위반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6조(유엔해양총회 회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회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회장 등의 사용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대회나 행사 준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태료의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회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0. 부칙

☐ 안 부칙은 시행일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26년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의 성격을 지니는데,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 및 개최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행사가 끝난 이후에 불필요한

행정조직 및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유사 입법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⁹⁾

문 의 처

02)6788-5422

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1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개요

□ 명칭: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추진배경

- 2000년 9월 범지구적 의제로 채택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가 2015년을 기점으로 종료되어 이를 대체할 의제 필요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유엔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채택한 범지구적 의제(빈곤의 감소와 보건 및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 등에 관한 8가지)

□ 주요내용

- 2015년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되는 국제적 공동목표
- ①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등), ② 지구 환경문제(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③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등)를 해결하고자 17개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하여 시행



참고2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14 주요내용

Goal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4.1	2025년까지 특히 육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 해양쓰레기, 부영양화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상당 부분 감소시킨다.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회복성을 강화하여 상당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위해 복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4.3	모든 방면에서의 강화된 과학적 협력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한다.
14.4	2020년까지 최소한의 실현가능한 기준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어족자원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수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IUU(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와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시키며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시행한다.
14.5	2020년까지 국가 및 국제법에 일치하도록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적어도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을 보존한다.
14.6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 보조금 협상에서 필수부가결한 요소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생산과잉과 남획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없애며,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금지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 관광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군소도서개발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
14.a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저개발국의 발전과정에서 해양의 건강을 개선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향상시키며,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와 해양기술이전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어민들이 해양자원 및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c	당사국에 의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 당사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국제적 체제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반영한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한다.

참고3

제3차 UN해양총회 의제

구분	주요 내용
대주제	• (영문) Accelerating action and mobilizing all actor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 • (국문) 행동을 가속하고 모든 행위자를 동원하여 바다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소주제 (Ocean Action Panel 주제) (10개)	• (영문) Fostering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supporting small-scale fishers. • (국문) 소규모 어업인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수산관리 촉진 • (영문) Conserving, sustainably managing and restoring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cluding deep-sea ecosystems • (국문) 심해저 생태계·해양연안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 (영문) Promoting and supporting all forms of cooperation, especially at the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 • (국문) 모든 형태의 협력을 촉진·지지(특히, 지역 단위) • (영문) Preventing and significantly reducing marine pollution of all kinds, in particular from land-based activities • (국문)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의 예방 및 저감(특히, 육상기인오염) • (영문) Leveraging ocean, climate and biodiversity interlinkages • (국문) 해양-기후-생물다양성 상호연계성 활용 • (영문) Advancing sustainable ocean-based economies,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and coastal community resilience leaving no one behind • (국문)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지속가능한 해상운송, 연안지역사회의 회복력 제고 • (영문) Promoting the role of sustainable food from the ocean for poverty eradication and food security • (국문) 바다에서 얻는 지속 가능한 식량으로 빈곤 퇴치 및 식량 안보 실현 • (영문)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 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 (국문) 해양관련 과학협력, 지식역량 구축, 해양기술 및 교육을 강화하여 해양 건강을 위한 과학-정책 접점을 강화 • (영문) Enhanc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oceans and their resources by implementing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CLOS • (국문) 해양법(UNCLOS) 협약 이행을 통해, 바다와 수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정도 향상 • (영문) Mobilizing finance for ocean actions in the support of SDG14 • (국문) SDG14를 지원하는 해양행동을 위한 재정 동원

참고4

제3차 UN해양총회 주요 정부 참석자

No	국가	성명	직책
1	아르메니아	Vahagn Khachaturyan	대통령
2	베냉	Patrice Talon	대통령
3	바베이도스	Mia Amor Mottley	총리
4	벨리즈	John Briceño	총리
5	브라질	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6	캄보디아	Samdech Moha Borvor Thipadei Manet Hun	총리
7	중국	Han Zheng	부주석
8	코모로	Azali Assoumani	대통령
9	코스타리카	Rodrigo Chaves Robles	대통령
10	코트디부아르	Robert Mambé Beugré	총리
11	크로아티아	Andrej Plenković	총리
12	키프로스	Nikos Christodoulides	대통령
13	도미니카공화국	Luis Rodolfo Abinader Corona	대통령
14	에스와티니	Russell Mmiso Dlamini	총리
15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
16	그리스	Kyriakos Mitsotakis	총리
17	기니비사우	Umaro Sissoco Embaló	대통령
18	아일랜드	Micheál Martin TD	총리
19	키리바시	Taneti Maamau	대통령
20	키르기스스탄	Edil Baisalov	부총리
21	라트비아	Evika Siliņa	총리
22	라이베리아	Jeremiah Kpan Kounq	부통령
23	리비아	Mohamed Younis A. Menfi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24	멕시코	Wesley W. Simina	대통령
25	모나코	Le Prince Albert II	대공
26	모로코	Princess Lalla Hasnaa	공주
27	북마케도니아	Gordana Siljanovska-Davkova	대통령
28	팔라우	Surangel S. Whipps, Jr.	대통령
29	파푸아뉴기니	James Marape	총리
30	페루	Dina Ercilia Boluarte Zegarra	대통령
31	포르투갈	Luís Montenegro	총리
32	사모아	Fiame Naomi Mata'afa	총리
33	솔로몬제도	Jeremiah Manele	총리
34	동티모르	Francisco Kalbuadi Lay	부총리
35	투발루	Feleti Penitala Teo	총리
36	탄자니아	Philip Mpango	부통령
37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
38	니우에	Dalton Tagelagi	총리
39	마다가스카르	Andry Nirina Rajoelina	대통령
40	마셜제도	Hilda Heine	대통령
41	부룬디	Evariste Ndayishimiye	대통령
42	스페인	Pedro Sánchez Pérez-Castejón	총리
43	시에라리온	Julius Maada Bio	대통령
44	요르단	Abdullah II ibn Al Hussein	국왕
45	이라크	Abdullatif Jamal Rashid	대통령
46	카보베르데	José Maria Pereira Neves	대통령
47	쿡제도	Mark Brown	총리
48	타지키스탄	Emomali Rahmon	대통령

※ UNOC 결과문서 기준, 부총리급 이상 참석자 명단 재정리